# 대의원선거 공고

대의원선거규약(제2안)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의원선거를 실시하고자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구, 선거일시, 선거장소, 선거구별 선임하고자 하는 대의원수 등

선거구	선거일시	선거장소	대의원정수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후보자 등록기간	등록접수장소
제1선거구 (삼송동外4개동)	2024.08.29.(목) 10시~12시	삼송지점	29	2024. 08.12. ~ 08.23.	2024. 08.13. ~ 08.16.	본 점 및 전지점
제2선거구 (고양동外1개동)	2024.08.29.(목) 14시~16시		13			
제3선거구 (성사동外1개동)	2024.08.30.(금) 10시~12시		14			
제4선거구 (능곡동外5개동)	2024.08.30.(금) 14시~16시	3 <del>층</del> 회의실	27			
제5선거구 (고봉동外7개동)	2024.09.02.(월) 10시~12시		25			
제6선거구 (가좌동外6개동)	2024.09.02.(월) 14시~16시		12			
합 계			120명			

- 2. 선거사유 : 제14기 대의원 임기 만료(2024년 9월 30일)로 인하여
- 3. 선 거 권 :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회원명부에 등재된 자 중 6월 이상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대의원선거규약(제2안) 제4조(선거권)에 의거]
- 4. 피선거권: 대의원선거규약(제2안) 제5조(피선거권)에 의거
- 5.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대의원선거규약(제2안) 제17조(후보자등록신청)에 의거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 나. 이력서 1부.
  - 다. 선거공보 1부. (후보자가 선거공보 제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 가능)
  -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마. 회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1부. (이사장 발행)
  - 마의2.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바.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부.(이사장 발행)
  - 사. 비경업사실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아. 금고거래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1부.(이사장 발행)
  - 자.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원 접수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차.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1부.
  - 카. 기타 필요한 서류

2024년 8월 8일





## ■ 제15기 대의원 선거구

선 거 구	대의원정수	행 정 동	법 정 동		
제1선거구	29명	삼송동, 원신동, 창릉동, 효자동, 흥도동	삼송동, 오금동, 지축동, 신원동, 원당동, 동산동, 용두동, 효자동, 도내동, 원흥동		
제2선거구	13명	고양동, 관산동	고양동, 대자동, 벽제동, 선유동, 관산동, 내유동		
제3선거구	14명	성사동, 주교동	성사1·2동, 주교동		
제4선거구	27명	능곡동, 대덕동, 행신동, 행주동, 화전동, 화정동	내곡동, 대장동, 토당동, 덕은동, 현천동, 강매동, 행신1,2,3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향동동,화전동, 화정1,2동		
제5선거구	25명	고봉동, 마두동, 백석동, 식사동, 장항동, 정발산동, 중산동, 풍산동	문봉동, 사리현동, 설문동, 성석동, 지영동, 마두동, 백석동, 식사동, 장항동, 정발산동, 중산동, 산황동, 풍동		
제6선거구	12명	가좌동, 대화동, 덕이동, 송포동, 일산동, 주엽동, 탄현동	가좌동, 구산동, 대화동, 덕이동, 법곳동, 일산1,2,3동, 주엽1,2동, 탄현동		
합 계	120명				

#### ■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새마을금고 대의원선거규약 제2안 의거)

#### 제 4 조 (선거권)

- ①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2024.08.07.) 회원명부에 등재된 자중 **6월 이상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선거권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개정 2018. 9. 6>
  - 1. 파산선고를 받은 자
  - 2. 피성년후견인
  - 3. 미성년자
  - 4. 회원 탈퇴를 한 자(선거일 전일까지 탈퇴한 자를 포함한다)
- ② 선거권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제 5 조 (피선거권)

- ① 회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해당 선거구에서 피선거권이 있다.<신설 2018. 9. 6>
- ② 금고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정 2016. 1.20, 2018. 9. 6, 2021. 3. 5, 2022.11. 4>
  - 1.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제11호의3·제12호·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1의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 3.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2024.08.07.) **출자 20좌(1,000,000원) 이상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4. 금고에 대하여 1백만원 이상의 채무(원리금을 포함하되, 보증채무를 제외함)를 3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
- 5.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의 사업이용실적(**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는 선거공고일 1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전날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라목의 경우는 선고공고일 전날까지 공제청약이 승낙된 계약**으로 산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직장금고 및 설립이나 합병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가. 정관 제4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평잔 : 910,000원 이상
- 나. 정관 제4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저축성예금(거치식예금과 적립식예금의 합계) 평잔 : 8,840,000원 이상
- 다. 정관 제4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 평잔 : 1,270,000원 이상
- 라. 정관 제48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 이용에 따른 공제유효계약건수 : 2건 이상
- 6. 본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및 다른 금고의 대의원이나 임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 7. 본 금고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인 임직원의 배우자(사실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개정>
- ③ 제2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서 정한 피선거권의 자격기준 기산일은 당해 선거공고일 전날로 한다.<개정 2018. 9. 6>
- ④ 대의원의 임기 중 제2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의원은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금고는 자격상실 사유를 당해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6>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대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9. 6>
- ⑥ 대의원은 임기 중 제4항에 따른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고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11. 4>